

제12조 제4항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 조건 등 세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제14조 제1항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중복되어 있음.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임.

종합의견

1. 검토보고 요지내용의 수정검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중 중요부분에 대한 수정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2. 조례안의 구성, 용어사용의 중복성 등 체계상 미흡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재검토하여 차후 조례개정시 보완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2항중 “하수도시설기준”을 “관련규정”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2항중 “하도, 위탁사무의 특성상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를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범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3항중 “선정위원회”를 “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1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수탁기관은 관리·운영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안 별표 세목 “하수처리시설(제3조 관련)”을

“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차집관거”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중계펌프장”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펌프장 또는 하수처리장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주민복지 향상) ①하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하수처리시설 내의 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하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주변지역주민에게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2장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 ①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의 시행기관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 및 분뇨의 처리
4.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6.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시설)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1조(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기관은 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수탁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채납한다.

⑥수탁기관은 관리·운영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p>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4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p>	<p>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p>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별표 ></p> <p>하 수 처 리 시 설</p>			
시 설 별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랑하수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차 집 관 거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탄천하수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 강남구 일원동 580번지 일대
	차 집 관 거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가양하수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차 집 관 거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난지하수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번지 2호 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차 집 관 거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